

# COSMOS

Trust in organic and natural cosmetics

COSMOS  
ORGANIC

COSMOS  
NATURAL

## COSMOS-standard

### COSMOS-standard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 표준

버전 3.1 – 2020 년 6 월 1 일

본 문서는 2020 년 6 월 1 일 배포된  
COSMOS-standard 의 번역본이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문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eveloped by leading associations and  
certifiers in organic and natural cosmetics

[www.cosmos-standard.org](http://www.cosmos-standard.org)

목차

- 1. 소개..... 4
  - 1.1 COSMOS-standard 의 주요 목표..... 3
  - 1.2 관련 문서..... 4
- 2. 규정..... 5
- 3. 범위..... 5
- 4. 정의..... 6
- 5. 일반 사항..... 9
  - 5.1 예방 원칙..... 9
  - 5.2 동물 실험..... 9
  - 5.3 지속가능성..... 9
- 6. 원료의 유래 및 가공..... 10
  - 6.1 원료의 범주..... 10
  - 6.2 유기농 함량 계산 방법..... 13
- 7. 구성..... 16
  - 7.1 유기농 인증 화장품 관련 규정..... 16
  - 7.2 천연 인증 화장품 관련 규정..... 17
  - 7.3 천연 성분 함량 계산 방법..... 17
  - 7.4 팜유와 팜핵유 및 파생 제품..... 17
  - 7.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인증 규정..... 18
  - 7.6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 승인 규정..... 18
- 8. 보관, 제조 및 포장..... 19
  - 8.1 보관..... 19
  - 8.2 제조..... 19
  - 8.3 포장..... 19
  - 8.4 섭유..... 20
- 9. 환경 관리..... 21
  - 9.1 환경 관리 계획..... 21
  - 9.2 세척 및 위생..... 21
- 10.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 22
  - 10.1 일반 규정..... 22
  - 10.2 유기농 인증 화장품..... 22
  - 10.3 천연 인증 화장품..... 23
  - 10.4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23
  - 10.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원료..... 24
  - 10.6 홍보 문구..... 24

[10.7 회사명이나 제품군에 유기농을 사용하는 경우](#)..... 24

[10.8 이 표준과 관련된 서명, 이름, 용어의 사용](#)..... 24

- [11.인증 및 승인](#) ..... 25
  - [11.1 인증](#)..... 25
  - [11.2 원료 승인](#)..... 25
  - [11.3 인증 기관](#)..... 25
- [12. 표준 이행](#) ..... 26
  - [12.1 효력 발생](#)..... 26
  - [12.2 적용일](#)..... 26
  - [12.3 전환 조치](#)..... 26
- [부록](#) ..... 27

## 1. 소개

본 표준은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BDIH(독일), COSMEBIO & ECOCERT(프랑스), ICEA(이탈리아) 및 SOIL Association(영국)이 설립한 COSMOS-standard AISBL(벨기에에 본부를 둔 비영리 협회)이 개발한 유럽 및 국제 표준입니다.

### 1.1 COSMOS-standard 의 주요 목표

현재 과잉 개발과 개발 실패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지구 차원의 자연 환경 조화를 증진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경제 활동에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방식과 소비 행위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산업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유기농, 천연 화장품의 유럽 및 국제 표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산업에서는 원료 생산에서 완제품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예방 및 안전 원칙에 따라 단순 명료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농으로 생산된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책임감을 갖고 천연 자원을 사용하며 환경을 존중합니다.
- 깨끗하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존중하는 가공 공정과 제조 방법을 사용합니다.
- '녹색 화학'의 개념을 수용하고 발전시킵니다.

녹색 화학은 COSMOS-standard에 새롭게 추가된 개념으로 화장품 제형의 특수성과 제한성을 고려할 때(특히 식품과 비교하여) COSMOS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녹색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을 위한 인증 표준을 개발하고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 표준은 현 기술 수준을 고려해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규정이 표준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을 5개의 범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인간의 개입이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

1. 물 - 제품 개발에서 기본적인 필수 원료로 수질 보장은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2. 미네랄 원료 - 흥미롭고 필요한 원료지만 재생되지 않으므로 사용 및 가공 과정에 명확한 환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 이미 유기농 관련 유럽 및 기타 공인 표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4.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 인증을 위해서는 '녹색 화학' 표준에 따라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 깨끗하고 승인된 생산 공정을 통해 제조되어야 합니다.
5. 기타 원료 - 현 상황을 이 표준이 지향하는 목표점으로 활발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한 범주입니다.

COSMOS-standard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과 인류의 복지에 주요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오늘의 기술 잠재력이

내일의 기술 진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 장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1.2 관련 문서

### 1.2.1 관련 문서

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SMOS-standard
- COSMOS 기술 가이드(추가 해석과 설명)
- COSMOS 인증 표시 가이드
- COSMOS 관리 표준서 - 인증 및 인정 요구 사항

### 1.2.2 저작권

이 표준은 COSMOS-standard AISBL 의 자산이며 서면 허가 없이 복사, 복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2.3 개정

유기농과 천연 화장품 산업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술과 이해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OSMOS-standard 은 원료와 기술의 가용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고 공개적인 협의를 거쳐, 앞서 언급된 COSMOS 의 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2. 규정

---

이 표준의 사용자는 개정된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과 신규 화학 물질에 관한 EU REACH 규정(EC No. 1907/2006), 화장품 클레임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EU No. 655/2013), 기타 화장품에 관한 지역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표준에서 명시한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에 관한 규정은 많은 국가의 법제도에 부합하나 일부 국가에서 추가로 정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3. 범위

---

이 표준은 다음 범위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제품 및 원료에 적용됩니다.

- 범위 1: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 화장품, 유기농 성분을 함유한 원료 또는 기본 제형 인증
- 범위 2: 범위 1에 따라 인증된 표준품에 사용 가능한 비유기농 원료의 승인

이 표준은 유기농 또는 천연 화장품 및 원료 제조업자, 취급자 및 상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4. 정의

이 표준의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산물 원료 » - 농업이나 양식을 통해 수확하거나 자연에서 채집한 식물 및 동물 또는 미생물 제품.

« 보조제 » 원료 제조 과정에서 반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화장품 성분으로 간주되지 않음.

« 촉매 » - 공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변경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 화학적 가공 » - 부록 II(허용되는 공정) 및 부록 III(허용되지 않는 공정)에 수록된 화학적 공정을 이용하여 가공 또는 추출.

« 오염 물질 » -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 자연 상태에서 물질에 존재하지 않거나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양보다 과량 존재하며, 오염(유해, 잔류물) 및 독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

오염물질의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금속
- 방향족 탄화수소
- 농약
- 다이옥신 및 폴리염화비페닐
- 방사능
-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 곰팡이 독소
- 의약품 잔류물
- 질산염
- 니트로사민.

« 화장품 원료 » - ((EC) No. 1223/2009 인용) -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된 물질이나 혼합물 다음은 원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사용한 원료에 함유된 불순물
- 기술적인 이유로 원료 혼합물에 사용되지만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물질.

'원료'는 화장품 성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참고 - 완제품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물은 별도의 원료입니다.

« 화장품 » - ((EC) No. 1223/2009 인용) - 청결, 향기, 외형 변화와 보호 및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을 유일한 목적으로 또는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며, 인체의 외부(표피, 모발, 손톱, 입술, 외음부)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물질.

«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 - (지침 2001/18/EC 인용) 인간을 제외하고, 짝짓기나 자연적인 재조합(또는 둘 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이 아닌 인위적인 방식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유기체 유전자 변형에 사용되는 기술은 부록 1A(지침 2001/18/EC 인용)을 참조합니다.

«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파생물 » - GMO에 의해 또는 GMO로부터 생성되며, GMO가 물질의 원천 유기체이거나 물질의 필수적인 변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모든 물질.



« 제조업자 »(규정(EC) No. 1223/2009 인용) -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설계 또는 제조된 화장품을 소유하고 해당 제품을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 제조 » - 제품의 취득, 준비, 처리 및 표시를 위해 공장 또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

« 미네랄 » - 지질 작용으로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로 화석연료에서 기원한 물질은 제외.

« 혼합물 »(규정(EC) No. 1223/2009 인용) - 둘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나 용액.

« 부분(성분) » - 분자의 특정 부분.

« 나노 물질 » - (규정(EC) No. 1223/2009 인용) - 일면 또는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 또는 생체 지속성 물질로 크기는 1~100 나노미터 범위입니다.

« 천연 유래 » - 물,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와 그로부터 파생되어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및 그 일부) 석유 화학 원료 부분, 석유 화학 유래 보존제 및 변성제는 천연 유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비천연 원료(NNI) » - 석유 화학 유래 보존제 및 변성제를 포함합니다. 보통 석유 화학 물질에서 유래하나 구조 전체나 상당 부분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구조와 같습니다.

« 유기농 » - 유럽연합 규정(EC) 834/2007 를 준수하는 생산 시스템이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의 GL 32 를 참조하고 규정(EC) No. 834/2007 또는 동등한 국가 또는 국제 표준 또는 이 표준에 따라 공인 인증 기관이나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가진 기관이 인증한 기타 유기농 표준 이 표준에서 유기농은 다른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도 포함되며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 규정(EC) No. 834/2007 에 부합하는 표준이란 해당 규정에 명시된 장치를 통해 적합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을 말합니다.
- 국가 표준(국가 법제에서 인정하는 표준 등)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GL 32 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경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GL 32 를 표준점으로 사용한다고 간주됩니다.

« 유기농 성분 » - 규정(EC) No. 834/200 이나 그와 동등한 국가나 국제 표준 또는 이 표준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증 기관이나 당국이 인증한 유기농 생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성분(또는 제품)의 일부.

« 석유 화학 부분 » - 석유에서 유래한 분자의 부분.

« 물리적 가공 » - 부록 I(허용되는 공정)에 수록된 물리적 공정을 사용하여 가공 또는 추출.

« 1 차 원료 » - 화장품 성분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유래 및 미네랄 제품.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규정(EC) No. 1223/2009 인용) - 피부, 모발, 점막에 도포한 후 제거하도록 의도된 제품.

« 비누 » - 비누화 반응을 통해 얻은 제품(액상이나 고형).

« 물질 »(규정(EC) No. 1223/2009 인용) - 자연 상태 화학 원소와 화합물 또는 제조 공정에서 얻은 물질로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첨가제와 사용된 공정에서 파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되, 그러나 물질의 안정성과 구성에 변화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용제는 포함하지 않음.

« 완제품 » - 모든 원료(물, 미네랄 원료,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및 기타 원료)를 포함하는 최종 화장품.



## 5. 일반 사항

---

### 5.1 예방 원칙

원료, 기술 또는 공정이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예방 원칙에 따라 해당 원료나 기술, 공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험 예방 목적에서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5.1.1 나노 물질

나노 물질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 문서와 함께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1.2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GMO 또는 GMO 유래 1 차 원료나 성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차 원료나 성분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오염 수준은 0.9% 이하여야 하며, 우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출 한계 0.1%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5.1.3 방사선

감마선과 X 선 조사는 금지됩니다.

### 5.2 동물 실험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요청을 받은 제삼자는 동물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실험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요청을 받은 제삼자는 동물을 대상으로 화장품 성분을 실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법 외에 다른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 5.3 지속가능성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성은 인증 제품과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 5.3.1 팜유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사용되는 팜유와 팜핵유(및 그 파생 제품)는 인증된 유기농 또는 인증된 지속 가능 인증 팜유(CSPO)여야 합니다.

적용 규격 및 성분은 7.4 절을 참조합니다. 표준 시행은 12 절을 참조합니다.

출발 물질로 CSPO 가 요구되는 원료는 CSPO 유래 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해 시장 가용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COSMOS 는 COSMOS 공급 사슬 전반에서 팜유 원료 공급이 우림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6. 원료의 유래 및 제조 공정

---

이 표준에서 화장품 원료는 다음과 같은 다섯 범주로 분류됩니다.

- 물
- 미네랄과 미네랄 유래 원료
-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 기타 원료

성분 범주에 따라 다른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단일 성분 원료나 화장품 성분 혼합물의 유래와 구성에도 같은 분류 방법이 적용됩니다. 원료 제조업자는 기술 문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리 및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만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 또는 유기농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료의 유기농 성분 함량에 관한 자세한 요구 사항과 계산법은 아래 설명합니다.

### 6.1 원료의 범주

#### 6.1.1 물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위생 표준(100CFU/ml 이하)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용수
- 샘물
- 삼투압 정제수
- 증류수
- 해수

물은 부록 I에 수록된 물리적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6.1.2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미네랄은 의도적인 화학적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환경 친화적인 추출 공정을 사용합니다.

미네랄 유래 원료는 부록 IV에 수록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과 미네랄 유래 원료는 부록 I에 수록된 물리적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6.1.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물리적으로 가공한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유래 원료를 포함하며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 유래 1 차 원료는 부록 1 에 수록된 공정을 사용하여 추출되어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1 차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구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 식물 물질 및 미생물
- 살아 있거나 도축된 동물에서 추출된 1 차 원료.

동물 유래 원료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에 의해 생산되지만 동물의 일부가 아닌 물질
- 원료 획득 과정이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여서는 안 됨
- 부록 I 에 수록된 공정에 따라 생산되어야 함.

### 6.1.4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화학적으로 가공된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유래 원료는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1 차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 식물 물질 및 미생물
- 살아 있거나 도축된 동물에서 추출된 1 차 원료.

동물 유래 원료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에 의해 생산되지만 동물의 일부가 아닌 물질
- 원료 획득 과정이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여서는 안 됨
- 부록 I 과 II 에 수록된 공정에 따라 생산되어야 함.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미네랄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알코올과 다른 발효 부산물은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입니다.

다음은 요구 사항은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업자에 적용되며, 제조업자는 녹색 화학 원칙에 따라 각 원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모든 반응 단계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미국환경보호국 녹색 화학 프로그램, USA, 1998, [www.epa.gov/greenchemistry](http://www.epa.gov/greenchemistry)).

화학적으로 가공한 농산물 원료의 제조업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록 II 에 수록된 화학 공정과(허용되는 않는 화학 공정은 부록 III 참조) 재생 가능한 자원만 사용해야 합니다.
- 배양이나 발효를 통해 얻은 원료 및 GMO 생명공학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배양에 사용되는 영양분은 천연 식물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나 그로부터 파생된 물질이 아닌 미생물 원료여야 합니다.
-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에 적용되는 다음 정량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칙	요구 사항
원자 경제성	반응 질량 효율(마지막 반응 단계) $\geq 50\%$ 반응 질량 효율 = (의도하는 제품의 중량 / 모든 반응물의 중량) x 100
비지속성, 생물학적 비축적성, 무독성 제품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물질 및 제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생독성(LC50, EC50, IC50) > 1mg/l 및 생분해성 > 95%  수생독성(LC50, EC50, IC50) > 10mg/l 및 생분해성 > 70%(또는 아래 요구 사항에 따라 60%)  수생독성: COSMOS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LC50/EC50 값을 결정하기 위해 새로운 어류나 물벼룩을 이용한 시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간접적인 대체 시험법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거나 생체 외 시험법을 이용합니다.  허용되는 생분해성 시험법:  - OECD 301A(ISO 7827) 또는 OECD 301E, 분해율 > 70%  - OECD 301B(ISO 9439), OECD 301C, OECD 301D(ISO 10707), OECD 301F(ISO 9408) 또는 OECD 310(ISO 14593), 분해율 > 60%

참고 - 원자 경제성과 비지속성 요구 사항이 면제되는 주요 특정 범주의 성분은 부록 VIII 을 참조합니다.

현 녹색 화학 발전 단계에서는 아직 모든 원칙의 한계나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원칙과 관련하여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제조업자는 원칙의 적용과 계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칙	요구 사항
에너지 경제성 (낮은 에너지 사용량)	요점 정보 (공장 전체에 적용 가능)
임시 변형 부재 (유도체화 반응)	요점 정보
분석 방법 (실시간 분석 등)	요점 정보
폐기물 저감	요점 정보 (공장 전체에 적용 가능)
사고 위험 제한	요점 정보

그러나 녹색 화학은 계속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녹색 화학의 원칙 및 실행 방법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한 원칙과 실행 방안을 이 표준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참고 - 전환 기간은 12 절 '시행'을 참조합니다.

### 6.1.5 기타 원료

일부 기타 원료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효과적인 천연 대체제가 없을 경우 사용이 허용됩니다. 부록 V에 수록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2 유기농 함량 계산 방법

아래 계산 방법은 화장품 원료의 유기농 성분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공된 유기농 농산물 원료와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가 4 절 '정의'에 정의된 인증 유기농 생산 시스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표준에 부합하는 유기농 성분임을 제조업자가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료가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 유기농 성분 함량은 없습니다.

모든 원료는 이 표준에 따라 계산된 실제 유기농 함량을 기술적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6.2.1 물

물은 유기농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 직접 첨가된 물 또는
- 혼합물로나 다른 원료의 성분과 함께 간접적으로 첨가되는 물, 예를 들어 미네랄이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와 함께 첨가되는 물.

신선한 식물의 액상 내용물(즙)은 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추출물이나 건조 또는 농축 원료의 복원은 6.2.3 를 참고합니다.

### 6.2.2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미네랄과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6.2.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PPAI)

- a)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의 경우, 오직 1 차 유기농 원료만 사용하거나 1 차 유기농 원료와 유기농 용매만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유기농 함량은 100%입니다.
- b) 수용성 추출물의 경우,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단계:

비율 = [신선한 유기농 원물 / (추출물 - 용매)]

비율이 1 보다 클 경우 1 로 계산합니다.

#### 2 단계:

유기농 함량(%) = {[비율 × (추출물 - 용매) / 추출물] + [유기농 용매 / 추출물]} × 100.

#### 조건:

- 용매는 최종 추출물에 잔류하는 용매의 양을 말합니다
- 물은 용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같은 식물의 유기농과 비유기농 혼합물은 유기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만 사용하여 추출하는 수용성 추출물의 경우,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유기농 함량(%) = (신선한 유기농 원물 / 추출물) × 100

- c) 비수용성 추출물의 경우,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유기농 함량(%) = (유기농 식물\* + 사용하는 유기농 용매) / (식물\* + 총 사용 용매) × 100.

\*신선 또는 건조 식물 원료

#### 조건:

- 용매는 최종 추출물에 잔류하는 용매의 양을 말합니다. 물은 용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같은 식물의 유기농과 비유기농 혼합물은 유기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 조건(위 a, b, c 에 해당):

- 알코올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유기농 원료가 비유기농 알코올로 추출된 경우, 이 원료는 유기농 함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원료를 물이나 비유기농 용매 또는 운반체로 희석하거나 가공 후에 다른 첨가물과 혼합할 경우 유기농 함량은 그에 따라 감소합니다.



- 추출물의 유기농 함량 계산 시 건조 식물과 동등한 신선한 원물의 중량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 건조물과 원물의 실제 비율을 사용합니다(근거 자료 필요)
  - 또는 다음 비율을 사용합니다

나무, 껍질, 씨앗, 견과류, 뿌리	1 : 2.5
잎, 꽃, 지상부	1 : 4.5
과일(살구, 포도 등)	1 : 5
물이 많은 과일(오렌지, 파인애플 등)	1 : 8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 농축액과 건조 분말은 자연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제형에 첨가되기 전 복원합니다
  - 농축액이나 분말은 첨가제나 운반체 등 다른 성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예를 들어 운반체와 혼합된 말토덱스트린은 복원할 수 없음).

참고: 품질은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결 건조법입니다.

만약 신선 원물이 유기농이 아니며 추출물 내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비율(%)을 계산하려는 경우, 위 b)나 c)에서 유기농 원물을 비유기농 원물로 대체합니다.

#### 6.2.4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CPAI)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에서 원료의 유기농 함량은 해당 1 차 유기농 원료의 비율(중량)로 계산하며, 원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든 1 차 원료를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text{CPAI 유기농 함량(\%)} = \frac{[(\text{사용된 모든 유기농 1 차 원료} - \text{과량 유기농 1 차 원료}) / (\text{사용된 모든 1 차 원료} - \text{과량 1 차 원료})] \times 100.}$$

조건:

- 비반응성 용매는 1 차 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량은 반응 후에 재활용되거나 제거되는 1 차 원료의 양을 뜻합니다
-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를 물, 비유기농 용매 또는 운반체로 희석할 경우, 유기농 함량은 그에 따라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 100% 유기농 1 차 원료의 분열로 얻어지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100% 유기농으로 간주합니다.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이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유기농 성분의 최소 함량이 적용되지 않으며
- 위 방법으로 계산된 유기농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7. 구성

---

이 표준에서는 완제품과 원료를 두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 유기농 인증 화장품
- 천연 인증 화장품
- COSMOS certified 원료
- COSMOS approved 원료

화장품에서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PPAI)의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PPAI 제품(%) = 개별 PPAI 원료 중량의 합 / 모든 원료의 총 중량 x 100

유기농 PPAI 제품(%) = 개별 유기농 PPAI 중량의 합 / 모든 원료의 총 중량 x 100

유기농 제품(%) = [개별 유기농 PPAI 중량의 합 + 개별 유기농 CPAI 중량의 합] / 모든 원료의 총 중량 x 100.

### 7.1 유기농 인증 화장품 관련 규정

#### 7.1.1 원료

-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잔여 농산물 원료가 부록 VI 에 수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 부록 VII 에 수록된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반드시 유기농 원료여야 합니다.

구성에서 CPAI 함량이 높아 95% 이상 유기농 PPAI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비누, 알코올 분무기, 향수, 화장수, 향수, 담수 등), 다음 표준이 적용됩니다:

- 알코올이 주성분인 경우(제형의 50% 이상이 알코올)), [PPAI + 알코올]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text{유기농 PPAI} + \text{유기농 알코올}] / [\text{모든 PPAI} + \text{알코올}] > 95\%$$
- 비누:
  - 원료로 비누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식물성 기름 사용), 같은 표준이 적용됩니다. 유기농 PPAI / 모든 PPAI > 95%
  - 솥 누들을 사용하고 다른 원료가 첨가되는 경우 다음 계산을 따릅니다. [PPAI + CPAI 비누]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유기농 PPAI + 유기농 CPAI 비누] / (모든 PPAI + CPAI 비누) > 95%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text{유기농 CPAI 비누} = \frac{[(\text{유기농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과량 유기농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과량 비누화 농산물 원료})] \times 100}$$

$$\text{CPAI 비누} = \frac{[(\text{모든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과량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과량 비누화 농산물 원료})] \times 100}$$

비누화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첨가제(구연산 등)는 이 식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잔여 농산물 원료가 부록 VI 에 수록된 경우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7.1.2 완제품

- 완제품 표준으로 최소 2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비유화 수용성 제품, 미네랄 또는 미네랄 유래 성분이 80% 이상인 제품은 완제품 표준 1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7.2 천연 인증 화장품에 관한 규정

최소 유기농 함량 표준은 없습니다(그러나, 10.3 의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제품 표시에 유기농 원료를 기재할 수 있음).

유기농 함량이 없는 기본 제형(샴푸 베이스, 비누 베이스 등)은 일반적인 승인 과정 품목이 아닙니다. 대신 유기농 함량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COSMOS CERTIFIED 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현장 심사 포함).

## 7.3 천연 함량 계산 방법

화장품에서 천연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총 천연 함량}(\%) = \frac{[\text{완제품 중량} - \text{비천연 원료(NNI)의 중량(부록 V.1)} - \text{석유 화학 부분(부록 V.3) 중량} / \text{모든 원료의 중량}] \times 100.}$$

## 7.4 팜유와 팜핵유 및 파생 제품

COSMOS certified 제품, 인증 원료, 승인 원료에 사용되는 다음 원료는 반드시 유기농 유래거나 적어도 MB 공급 사슬 모형을 사용하여 인증된 지속 가능 인증 팜유(CSPO)이어야 합니다:

- 팜유(참고: COSMOS Organic 제품에는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록 VI 참조)
- 팜핵유
- 글리세린,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코코베타인
- 지방산: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미리스트산, 라우르산
- 지방알코올 : 세틸알코올, 세테아릴알코올, 스테아릴알코올, 라우릴알코올
- 지방산 또는 지방알코올로 만들어진 에스터: 세틸팔미테이트, 세틸포스페이트, 미리스틸미리스테이트, 글리세릴 모노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올리에이트
- 트리글리세라이드: C8-C10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C8-C10 트리글리세라이드.

상용 표준품이나 혼합물이 위 목록에 수록된 성분을 모두 함유하는 경우, 사용된 원료는 모두 유기농이거나 CSPO 이어야 합니다(예: 제품에 함유된 스테아르산과 팔미트산은 CSPO 유래 물질이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판매/사용되는 혼합물이 위 목록에 포함된 일부 성분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추출물 등), 어떠한 원료도 CSPO 일 필요는 없으나 가능하다면 CSPO 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위 목록에 포함된 성분에 물을 첨가한 경우 원료는 CSPO 유래 물질이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공급 사슬 모형은 MB(Mass Balance) 이상입니다. 따라서 '분리됨'과 '특성 보존됨(IP)' 등급은 허용되나 '예약 및 클레임' 등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표준 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2 절 '시행'을 참조합니다.

### **7.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인증 규정**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 COSMOS CERTIFIED 를 신청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기농 성분을 함유한다는 사실을 입증되었다면 유기농 성분의 함량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최소 표준이 없음).

### **7.6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 승인 규정**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의 COSMOS APPROVED 를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최소 유기농 성분 함량은 없습니다.

## 8. 보관, 제조 및 포장

---

### 8.1 보관

보관구역은 제품의 순수성을 혼란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8.2 제조

유기농 또는 천연 원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제조 공정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포함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료 및 완제품의 완전한 이력 추적
- 모든 단계의 제조 절차
- 원료와 제품 시험
- 분석, 제조, 보관 기록.

### 8.3 포장

1 차 및 2 차 포장과 섬유 구성 성분은 아래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브러시, 화장 도구(어플리케이터), 기술적인 부품 등 보조품은 아래 표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8.3.1 수명 주기에 걸쳐 포장이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사용하는 소재의 양을 최소화합니다
-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소재의 양을 최대화합니다
- 가급적 재활용 소재를 사용합니다.

포장 유형별로 이러한 포장 관행을 사용한 점을 현장 심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8.3.2 포장은 적어도 3 년마다 표준 8.3.1 에 따라 검토하고 검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토를 진행한 회의록을 보관하거나 회의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공식 정책을 수립합니다.

8.3.3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는 부록 IX 허용 포장재 목록에 수록된 소재여야 합니다.

## 8.3.4 다음 재질은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폴리염화비닐(PVC)과 기타 염화 플라스틱
- 폴리스티렌과 스티렌을 함유하는 기타 플라스틱
-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포함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질이나 소재
- 동물의 일부 또는 동물 유래 물질(가죽, 실크 등).

이러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로 공급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8.3.5 다른 소재로는 필요한 특성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 특정 기술적 목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펌프, 화장 도구(어플리케이터), 드롭퍼, 브러시 등). 기술 문서와 함께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3.6 다음 물질만 분사 가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기
- 산소
- 질소
- 이산화탄소
- 아르곤.

**8.4 섬유**

일부 화장품은 구성 요소로 섬유(물티슈, 스트립, 마스크, 패드 등)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SMOS 유기농 제품의 경우, 화장품 제형은 이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섬유 물질은 100% 유기농 인증 물질이어야 합니다
- COSMOS 천연 제품의 경우 섬유 구성 요소는 이 표준에서 명시한 물리 및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기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리오셀과 비스코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섬유의 중량은 최종 제품의 유기농 및 천연 함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표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정은 섬유에도 적용됩니다(부록 III 참조).

다른 소재가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기술 문서와 함께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9. 환경 관리

### 9.1 환경 관리 계획

9.1.1 전 제조 공정과 모든 잔여물 및 폐기물을 고려하여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 관리 계획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환경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기상, 액상, 고상 폐기물을 포함한 제조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계획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으로 폐기물 저장, 재사용, 재활용을 목표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 - ISO 14000 또는 국가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이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1.2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지, 유리, 종이 및 기타 폐기물을 분류하고
-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 기타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냅니다.

### 9.2 세척 및 위생

9.2.1 원료가 이 표준에 부합하는 세척제와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식물 유래 알코올, 데실글루코사이드 등).

9.2.2 다음 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소프로필알코올
- 양쪽성 계면활성제
- 과산화수소
- 무기산과 알칼리
- 과산화아세트산(및 안정제)
- 포름산
- 오존
- 다음 표준을 충족하는 식물성 계면활성제:
  - 생분해성: 규정(EC) No. 648/2004 부칙 III(최종 생분해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수생 독성: EC50, IC50 또는 LC50 > 1 mg/l
-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에 따라 인증된 식물성 세정제(자세한 사항은 기술 가이드 참조).

인증 기관은 특정 산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예외 적용(제약, 식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2.3 고객은 세정제 잔류물이 없는지 검증하여야 합니다.

9.2.4 고객은 제조 진후에 적합한 세척제와 소독제가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검사 계통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검사 계통에 검사 절차, 데이터 기록 및 작업원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10.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

### 10.1 일반 규정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은 명확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 아래 수록된 요구 사항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부분의 국가 법제와 일치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법률 조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구 사항은 인증 표시 가이드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 10.2 유기농 인증 제품

유기농 인증 제품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 표시 가이드에 따라 COSMOS ORGANIC 서명과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장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에 인증 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표시에 완제품 중량 표준 유기농 성분의 함량을 '완제품 표준 유기농 함량 x%'와 같이 기재합니다
- (6.2.1 과 6.2.2 에서 정의한 대로)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대비 유기농 성분의 함량을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표준 유기농 함량 y%'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위-함량 표시 방법 중 하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표시에 완제품에서 중량 표준 천연 성분의 함량을 '완제품 중량 표준 천연 함량 x%'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기농 성분과 유기농 원료로 제조된 성분은 INCI 목록에 기재합니다. 유기농 표시 문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 유래'로,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라고 표시하거나 INCI 목록에 사용된 문구 또는 비슷한 문구로 표시합니다.

예로 '유기농 샴푸'와 같이 제품의 명칭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완제품에 유기농 함량이 최소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기농 함량이 100%이거나 천연 함량이 100%인 제품의 경우 천연 함량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완제품에서 중량 표준 유기농 성분 함량을 '완제품 중 인증 성분 x%'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10.3 천연 인증 제품

천연 인증 제품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 표시 가이드의 상세 설명에 따라 'COSMOS NATURAL' 서명과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증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에 인증 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표시에 완제품에서 중량 표준 천연 성분의 함량을 '완제품 중량 표준 천연 함량 x%'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유기농 성분과 유기농 원료로부터 생산된 성분을 INCI 목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표시 문구와 같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 유래',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라고 표시하거나 INCI 목록에 사용된 문구 또는 비슷한 문구로 표시합니다
- 표시에 완제품에서 중량 표준 유기농 성분의 함량을 '완제품 중량 표준 유기농 함량 x%'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6.2.1 및 6.2.2 에서 정의한 대로)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표준 유기농 성분 함량을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표준 유기농 함량 y%'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포장 전면의 유기농 표시 사항은 전체 제품 대비 유기농 함량과 유기농 성분으로 제한되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포장 전면에서 가장 작은 글씨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COSMOS NATURAL 서명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포장 전면에 위 첫 번째 항목에 부합하도록 표시합니다)
- 해당 유기농 원료는 INCI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 단락 세 번째 항목에 따라).

100% 천연 제품의 경우, 천연 유래 함량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4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6.2.3 및 6.2.4 에 따라) 유기농 인증 원료:

- 인증 표시 가이드의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 COSMOS CERTIFIED 서명과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장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에 인증 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표시 및 관련 문서에 전체 성분 중량 표준 유기농 함량을 '유기농 x%'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10.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원료**

(6.2.2, 6.2.3 및 6.2.4 에 따라) 승인된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

- 인증 표시 가이드의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 COSMOS APPROVED 서명과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장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표시에 인증 기관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이나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인증 표시나 관련 문서에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10.6 홍보 문구**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 유기농, 천연 제품 또는 원료를 언급할 경우 표현 문구는 10.2, 10.3 및 10.4 의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10.7 회사명이나 제품군에 유기농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명이나 제품군 명칭에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인증 제품과 함께 회사명이나 상표명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0.8 이 표준과 관련된 서명, 이름, 용어의 사용**

COSMOS 서명, 이름, 용어는 문헌, 광고, 홍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OSMOS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10.2, 10.3, 10.4 및 10.5 설명을 따라야 합니다
- 인증 제품 또는 인증 원료와 사용되어야 하며
- COSMOS 서명이 비인증 제품과 연관되어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COSMOS 서명이 비인증 제품과 연관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방식 등).

참고: 특히 이러한 실수는 명확한 상황 설명 없이 비인증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문서에 이름(COSMOS)을 언급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 11. 인증 및 승인

---

### 11.1 인증

이 표준에 따라 유기농 또는 천연 제품(성분)으로 화장품 원료 또는 화장품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 문서에 기술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 기관은 문서 확인과 현장 심사를 토대로 인증을 수행합니다. 인증은 원료 확인에서 완제품 유효성 검사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11.2 원료 승인

비유기농 화장품 원료의 승인은 현장 심사 없이 문서 검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증 기관의 승인은 인증과 다릅니다. 승인은 비유기농 원료가 이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기관의 요청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원료 가공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증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된 화장품 원료가 이 표준에 따라 인증되었다고 표시하거나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시 조항과 추가적인 설명은 표시 가이드 10.5 를 참조합니다.

### 11.3 인증 기관

이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COSMOS-standard AISBL 의 (준)회원이어야 하며, 관리 표준서에 명시된 자격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인정과 인증 요구 사항: 전제 요구 사항으로 ISO 17065 를 포함하여 COSMOS-standard 체계를 따라 인정되어야 함).

인증 기관은 이 표준과 관리 표준서(인정과 인증 요구 사항), 인증 표시 가이드에 따라 COSMOS-standard, COSMOS 서명, 이름,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에 COSMOS-standard AISBL 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12. 표준 이행

---

### 12.1 효력 발생

이 표준(버전 3.1)은 2020년 6월 1일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 12.2 적용일

이 표준(버전 3.1)은 2020년 6월 1일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 12.3 전환 조치

이 표준(버전 3.1)은 COSMOS-standard 버전 2, 12.2 절 마지막 항목에 따라 인증 또는 승인되지 않은 화장품과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록

---

부록 I: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28

부록 II: 농산물 가공에 허용되는 화학적 공정..... 30

부록 III: 허용되지 않는 공정의 예..... 32

부록 IV:사용 가능한 미네랄 유래 원료 ..... 33

부록 V:기타 사용 가능한 원료..... 37

부록 VI: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 40

부록 VII: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 42

부록 VIII: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 관련 예외 적용 대상 ..... 43

부록 IX:포장재 ..... 44

## 부록 I: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

다음 표준을 사용하여 공정을 선택합니다:

- 원료에 존재하는 천연 활성 물질을 보존하는 공정
- 우수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고려하는 공정.

모든 추출물은 모든 형태의 물과 천연 물질과 함께 다음을 포함하는 식물성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되어야 합니다:

- 에틸알코올
- 글리세린
- 식물성 기름
- 꿀
- 초임계 이산화탄소 흡수

이 표준에 적합한 불활성 지지체에 흡수

탈색 - 탈취(이 표준에 부합하는 불활성 지지체 이용)

혼합

원심 분리

달임

탈색(허용 탈색제: 벤토나이트, 활성탄, 표백토, 과산화수소, 오존)

건조(증발이나 햇볕에 의한 자연 또는 점진 건조)

탈테르펜(증기를 이용한 분별 증류)

증류, 압착, 추출(증기)

추출

여과, 정제(초여과, 투석, 결정화, 이온교환)

냉동

분쇄

우려냄

동결 건조

침연

전자레인지

삼출

압력

로스팅

침하, 상층액 분리

체로 거르기

압착, 분쇄

UV 멸균

열처리 멸균(온도는 활성 성분에 따라 다름)

초음파

UV 처리

진공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무기산 수용액(염산, 황산, 인산, 등)은 중화, 정화, 추출을 위한 제조 보조제로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반응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원료나 성분)
- 따라서 제조 보조제는 원료나 완제품의 INCI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록 II: 농산물 가공에 허용되는 화학적 공정

---

다음 표준을 사용하여 공정을 선택합니다:

- 생분해성 분자가 형성되는 공정
- 원료에 존재하는 천연 활성 물질을 보존하는 공정
- 우수 폐기물 관리 및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고려하는 공정.

알킬화

아마이드 형성

생명공학공정

식물 잔류물의 회화

탄화(레진, 유기농 지방유)

응축, 부가

에스테르화, 에스테르결합전이반응, 에스테르교환

에틸화

수화

수소화

가수 분해

이온교환

중화

산화/환원

인산화(잔류형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만 허용)

비누화

황화

### 석유 화학 용매 사용

COSMOS-standard 은 화학적으로 처리되는 농산물 원료의 가공에 천연 유래 용매의 사용을 증진합니다. 현재 개발 실정을 고려하여 석유 화학 용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 화학 용매는 효과적인 천연 대체 용매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재활용 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질소 또는 황(DMSO 제외) 기반 용매는 화학적으로 처리된 농산물 원료의 용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용매가 완전히 제거되더라도 포름알데히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가공된 유기농 농산물 원료:

- 석유 화학 용매나 석유 화학 보조제(촉매, 소포제 등)는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제는 이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할로겐화 공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활성화 단계에서도 사용 불가).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무기산 수용액(염산, 황산, 인산, 등)은 중화, 정화, 추출을 위한 제조 보조제로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반응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원료 또는 성분)
- 따라서 제조 보조제는 원료나 완제품의 INCI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황화 반응에 대해 허용되는 황산, 인산화 성분을 제조하기 위해 허용되는 인산제는 잔류형 제품에만 허용됩니다.

인산화 화합물의 사용 조건:

- 잔류형 제품 및 사용 후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만 허용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인산염을 함유하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조 단계에서 할로겐화된 인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유기 인산염 분자에서 인산염 함량이 5% 이하입니다,
  - 제조 시설은 자체 하수 처리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부록 III: 허용되지 않는 공정의 예

---

부록 I 과 부록 II 에 수록된 공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 허용되지 않는 일부 주요 공정을 예시하였습니다.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또는 기타 알킬렌 옥사이드를 이용한 알콕실화(에톡실화 및 프로폭실화 포함)

탈색 - 탈취(동물 유래 지지체)

탈페르펜(증기 외 다른 물질 사용)

할로겐화(주반응)

이온화 방사선

설폰화(주반응)

수은을 사용하는 처리

에틸렌옥사이드를 사용하는 처리

## 부록 IV: 사용 가능한 미네랄 유래 원료

미네랄 유래 원료\*는 아래에 수록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료는 다음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용 한도 내에서
- 또는 사용 제한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유래 인산염 성분은 아래 수록된 원료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완충, 킬레이트, 고결 방지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수록된 '미네랄 유래 원료'의 모노-, 디-, 트리-, 폴리- 형태의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관련 표준은 6.1.2 를 참조합니다.

ICNI 명	화학명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알루미늄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알루미늄		보크사이트(깁사이트, 하이드라질라이트)
알루미늄아이런실리케이트	실리카알루미늄실리케이트세라믹		세라믹(규산염 광물을 가열하여 얻은)
알루미나	산화알루미늄		커런덤, 점토
알루미늄설페이트	황산알루미늄		알루노겐(천연) 화산 유래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		
바륨설페이트	황산바륨	코팅제로 사용되는 경우만	
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	칼슘알루미늄보로실리케이트		토르말린
칼슘카보네이트, CI 77220	탄산칼슘		퇴적암, 석회암, 아라고나이트, 바테라이트 대리석, 분필, 백운석의 주성분
칼슘클로라이드	염화칼슘		
칼슘플루오라이드	플루오르화칼슘	구강 위생 제품에만 해당	형석, 단순 할로겐 광물의 광물 계열에서 흔한 미네랄
칼슘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칼슘		
칼슘소듐보로실리케이트	붕규산칼슘나트륨		
칼슘설페이트	황산칼슘		석고
세륨옥사이드	산화세륨		세릿
CI 77163	옥시염화비스무트		비스모클라이트
CI 77288	산화크롬		

ICNI 명	화학명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CI 77289	수화산화크롬		구이나이트, 그리말디트, 브라세웰리트, 에스콜라이트
CI 77489	산화철		베스날리트, 페록시지트 페리하이드라이트, 침철석 레피도크로사이트
CI 77491			
CI 77492			
CI 77499			
CI 77510	프러시안 블루		카페하이드로시아나이트
CI 77742	망가니즈바이올렛		박쥐 구아노 분해물
CI 77745	트라이망가니즈 비스(오르토포스페이트)		
카퍼	구리		
	산화구리		
카퍼셀페이트	황산구리		풍화 산물, 황화 구리 광석, 담반
규조토	소결 규조토		
디칼슘포스페이트디하이 드레이트	칼슘하이드로젠오르토포 스페이트	구강 위생 제품에만 사용	
페러스셀페이트	황산철		
골드	금		
하이드레이티드실리카	규산		규사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수산화인석	구강 위생 제품에만 사용	치아 에나멜 성분
아이런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철		
마그네슘알루미늄실리케 이트	규산, 알루미늄마그네슘염		
마그네슘카보네이트, CI 77713	탄산마그네슘		마그네사이트, 백운석
마그네슘카보네이트하이 드록사이드	수산화탄산마그네슘		아르티나이트, 히드로마그네사이트, 디핀자이트(Dypingite)
마그네슘클로라이드	염화마그네슘		
마그네슘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마그네슘		
마그네슘옥사이드	산화마그네슘, CI 77711		
마그네슘포스페이트	인산마그네슘	산화아연과 사용하는 경우에만	
마그네슘실리케이트	규산, 마그네슘염		사문석 계열 활석, 해포석, 미네랄
마그네슘셀페이트	황산마그네슘		키제르석

ICNI 명	화학명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마그네슘셀페이트	황산마그네슘		
마이카	운모, CI 77019		안나이트, 금운모 백운모
포타슘알룸	백반		
포타슘카보네이트	탄산칼륨		내수, 재 형태 (사해, 로노누로 사막)
포타슘클로라이드	염화칼륨		칼리 암염, 광로석, 카이니트석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칼륨		
포타슘아이오다이드	요오드화칼륨		
포타슘셀페이트	황산칼륨		
포타슘티오시아네이트	티오시아나산칼륨	보존제, 산화방지 시스템의 첨가제로 최대 1%	
실리카	이산화규소		규사
실버	은		
실버클로라이드	염화은		은광석. 황화물, 황산염, 산화물로 납-구리, 아연 광석과 주로 함께 존재
실버옥사이드	산화은		
실버셀페이트	황산은		
소듐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나트륨		천연탄산소다, 미네랄 중탄산나트륨
소듐보레이트	붕산나트륨		붕사
소듐카보네이트	탄산나트륨		소산호에 존재하는 천연 탄산(다양한 결정형)
소듐클로라이드	염화나트륨		
소듐플루오라이드	플루오르화나트륨	구강 위생 제품에만 사용	해수, 샘물
소듐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나트륨		
소듐마그네슘실리케이트			
소듐메타실리케이트	메타규산이나트륨		
소듐모노플루오로포스페 이트	플루오로인산이나트륨	구강 위생 제품에만 사용	
소듐실리케이트	규산, 나트륨염		
소듐셀페이트	황산나트륨		글라우버염, 광전수, 데나르드석
소듐티오셀페이트	티오황산나트륨	비누에만 사용	

ICNI 명	화학명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티타늄디옥사이드, CI 77891	이산화티타늄	기술 가이드 5.1.1 참조.	예추석, 판티탄석, 금홍석
틴옥사이드	산화주석, CI 77861		층적토 주석석
울트라마린, CI 77007	군청		보석의 원석(청금석)
징크카보네이트	탄산아연 CI 77950		능아연석
징크옥사이드, CI 77947	산화아연	기술 가이드의 5.1.1 참조	울핀지트, 스위타이트, 아스호베라이트
징크셀페이트	황산아연		고슬러라이트

## 부록 V: 기타 사용 가능한 원료

이 부록은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대체 물질이 확인된 물질은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다음 성분은 유기농으로 인증될 수 없습니다.

### 1. 석유 화학유래(비천연물질 - NNI) 유래 보존제 및 변성제

성분	사용 제한
벤조산과 그 염	
벤질알코올	
살리실산과 그 염	
소르브산과 그 염	
탈수소 아세트산과 그 염	
데나토늄벤조에이트, 삼차부틸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변성제(프탈레이트류 제외)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에탄올 변성제로 사용되는 경우만

이 NNI 함량은 완제품 석유 화학 부분 함량 제한(2%)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 2. 다음 농산물은 석유 화학 용매를 사용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성분	사용 제한
베타인	
카라기난	
레시틴 및 그 유도체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오리자놀	
안나토	
카로티노이드/잔토필	
앰솔루트, 콘트리트, 레지노이드	COSMOS NATURAL 만
라놀린	
피토스테롤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및 글라이코리피드	

어떠한 경우에도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질소 또는 황 기반의 용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된 용매는 완제품에서 완전하게 제거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효용이 없는 농도로 제거하거나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3. 천연 유래와 석유 화학 부분(PeMo)를 모두 포함하는 원료**

계열	사용 가능한 INCI 참고: 이 열에 수록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열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동일 계열 모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	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	비누 제품에서 킬레이트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디알킬 카보네이트	디카프릴릴카보네이트	
알킬아미도프로필베타인	코코아미도프로필베타인/올리브 아미도프로필베타인/코코베타인	
알킬메틸글루카마이드		
알킬암포아세테이트/디아세테이트		
알킬글루코사이드카르복실레이트		
카르복시메틸 - 식물성 고분자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식물성 고분자 - 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구아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두발/수염 제품에만 사용
디알킬디모늄클로라이드	디스테아로일에틸디모늄클로라이드	두발/수염 제품에만 사용
알킬디모늄하이드록시프로필 가수 분해 식물성 단백질	코코디모늄하이드록시프로필 가수 분해 밀 단백질	두발/수염 제품에만 사용

이 성분표는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잠정 허용 대상을 적합한 대체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허용 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생태학적 특성이 더 바람직한 물질로 대체합니다.

석유 화학 부분은 전체 제품에서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석유 화학 부분이 포함된 원료에서 석유 화학 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석유 화학 부분(%) = 석유 화학 유래 부분 분자 중량 / 전체 분자량 × 100

천연 유래와 석유 화학 부분(PeMo)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는 유기농이 될 수 없습니다.



기타 원료

성분	사용 제한
스쿠알란	식물 유래
카민	
실크	
진주층/굴껍질 분말	자연 폐사 조개, 식품 폐기물이 아닌 야생 채취
카라멜	시약 및 공정이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부록 VI: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다음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은 유기농 형태로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COSMOS ORGANIC 인증 제품은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기술 가이드를 참조합니다.

다음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향수 및 향수 성분과 같이 복잡한 혼합물의 성분
- 석유 화학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원료(부록 V.2).

이 목록은 시판되는 물리적으로 가공된 유기농 농산물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됩니다.

일반명	INCI 명
아르간	아르간커널오일
아몬드	아몬드오일
살구	살구씨오일
캐모마일	마트리카리아추출물 마트리카리아꽃수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마트리카리아잎추출물 마트리카리아꽃오일 마트리카리아오일 마트리카리아꽃/잎/줄기추출물
피마자	피마자씨오일
코코아버터	카카오씨버터
코코야자	코코넛야자오일
우유	유(젖)
삼	마인오일
꿀	꿀(Mel)
호호바	호호바씨오일
레몬	레몬추출물 레몬열매추출물 레몬잎추출물 레몬즙 레몬껍질추출물 레몬오일 레몬꽃오일 레몬껍질오일 레몬잎오일
마카다미아	퀸즈랜드넛오일(마카다미아씨오일)

일반명	INCI 명
메리골드	포트마리골드꽃오일
올리브	올리브오일
야자	오일팜오일
페퍼민트	페퍼민트수 페퍼민트추출물 페퍼민트잎수 페퍼민트잎추출물 페퍼민트꽃/잎/줄기추출물 페퍼민트꽃/잎/줄기수 페퍼민트오일
로즈마리	로즈마리추출물 로즈마리꽃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로즈마리꽃/잎/줄기추출물 로즈마리수 로즈마리꽃/잎/줄기수 로즈마리잎오일 로즈마리꽃오일 로즈마리줄기오일
살비아	살비아오일
참깨	참깨오일
시어버터	시어버터 시어버터추출물
콩	글라이신콩오일
해바라기	해바라기씨오일

부록 VI 에 수록된 유기농 원료가 부족한 경우, 인증 기관은 관리 표준서 및 기술 가이드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예외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부록 VII: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

다음의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은 유기농의 형태로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COSMOS ORGANIC 인증 제품에서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목록은 시장에서 화학적으로 가공한 유기농 농산물의 가용성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ICNI	화학명
에탄올, 에틸알코올, 알코올	에틸알코올

부록 VII 에 수록된 유기농 원료가 부족한 경우, 인증 기관은 관리 표준서 및 기술 가이드 규정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부록 VIII: 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 관련 예외 적용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발효에서 생성되는 자연 발생 분자(히알루론산 등)
- 자연에 존재하는 분자가 분해되어 생성된 분자(전분 가수 분해로 생성된 말토덱스트린 등) 예외가 적용되는 분해반응은 효소 가수 분해와 무기산 또는 무기염 가수 분해 반응입니다
- 단량체의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6.1.4 에 정의된 비지속성 제품 특성을 충족하는 중합체(고분자)
- 경화유나 경화버터
- 향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자의 염(용매/물리적 추출 및 염화에 의해 얻은 염) 그러나 아연염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산과 알코올의 에스터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6.1.4 에 정의된 비지속성 제품 특성을 충족하는 난용성 에스터(폴리에스터 포함).

다른 원료의 경우, 시험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서면(참고 문헌) 자료를 제출하거나 교차 비교 또는 QSAR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기술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 부록 IX: 포장재

---

1 차 및 2 차 포장과 섬유 구성 요소는 포장재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브러시, 화장 도구, 기술 부품 등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속품은 포장 표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 가능한 물질 목록(일부 물질):*

- CA - 아세트산셀룰로오스
- 셀룰로오스
- 세라믹
- 유리
- 다음과 같은 금속: 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강 등
- 종이/판지
- PE - 폴리에틸렌
-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PETG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글라이콜
- PLA - 폴리락틱애씨드
- PP - 폴리프로필렌
- 고무(천연)
- 나무
- 기타 100% 천연 유래 소재(비 GMO).

사용 가능한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은 1 차 포장 요소에 적용됩니다:

- 용기
- 크림 용기
- 튜브
- 뚜껑
- 주머니
- 상자.

이 부분은 위에 수록된 사용 가능한 물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은 피부, 건강 및 화장 제품 등 모든 유형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기술 위원회에 기술 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용 슬리브 사용과 과대 포장*

다음은 제외하고 보호용 슬리브 사용이나 과대 포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밀폐 계통
- 소형 제품(화장 제품 등)
- 교체 비누 및 마사지 바(1 차 포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COSMOS-standard AISBL, Rue du Commerce 124, 1000 Brussels, Belgium**

**[info@cosmos-standard.org](mailto:info@cosmos-standard.org)**

**[www.cosmos-standard.org](http://www.cosmos-standard.org)**